비조치의견서 (□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	미소시키신시 (□미소시 및소시 □기다)	
	담당 부서IT검사국담당자 (직위, 성명)안기복 선임검사역연락처 인2-3145-7429	)
요청대상 행위	□ 금융회사가 프로그램 테스트 자동화 관리를 목적으로 외부통신망에 위치한 단말과 내부통신망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을 DMZ 구간에 위치한 중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 제5호 위반인지 여부	중계
판단	□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
판단이유	□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5조제1항제5호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, 개발,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전하는 단말기("이하 5호 단말기")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물리적으로 분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,  ○ 「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」제2조의2제2항은 업무상 외부통신망과 연결불가피한 정보처리시스템에 한하여 물리적 망분리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다.	접속 부터 결이
	□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가 프로그램 테스트 자동화 관리를 목적으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연결하는 것은 망분리 적용이 예외되는 업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위반하 것으로 보입니다.	무상
	<ul> <li>망분리 적용이 예외되는 '업무상 불가피한 경우'란 망분리 환경에서 경금융업무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고, 업무 수축가능하나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망분리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규정의 해석허용되기 어렵습니다.</li> </ul>	행은

- \*\* <u>비조치의견서의 효력</u>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항·제2항 참조)
 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
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 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 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